

## 2022 세무회계연습(정재연·이승원·이승철 저) 정오표 - 5. 2. 현재

교재 출간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오류사항에 대한 수정내역입니다.

표현방식의 단순한 변화 등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수험목적에 고려하여 생략하였습니다.

### 1.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2022년도에 개정된 근로소득자의 의료비세액공제 개정사항(난임시술비 30% 공제율 적용 및 미숙아 등 의료비 20% 공제율 적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등의 의료비 세액공제 규정에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등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동일하게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들었지만,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 국회의 입법과정을 고려해보면 회계사 2차시험일인 2022년 6월 25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입법과정의 오류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일 현재의 세법규정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2-270	하9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math display="block">\text{의료비 세액공제} = a + b</math> <math display="block">a. \text{공제대상 난임시술비} \times 20\%</math> <math display="block">b. a \text{ 제외 공제대상 의료비} \times 15\%</math> </div>
2-304	상8	a. 30% 적용분 ~	b. 20% 적용분 ~
	상10	③ 세액공제 : ₩600,000×30%+ ~ =₩735,000	③ 세액공제 : ₩600,000×20%+ ~ =₩675,000
	하3	(6) 세액공제 합계 : ~ =₩3,615,000	(6) 세액공제 합계 : ~ =₩3,555,000
	하1	~ -₩3,615,000=₩3,165,000	~ -₩3,555,000=₩3,225,000
2-308	상15	1,800,000	1,575,000
	상16	4,945,715	5,170,715
	하11	② 세액공제 : ₩2,250,000×30%+ ~ = ₩705,000	② 세액공제 : ₩2,250,000×20%+ ~ = ₩480,000
	하2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 =₩1,800,000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 =₩1,575,000
2-309	하1	3. 종합소득결정세액 : ~ -₩1,800,000=₩4,945,715	3. 종합소득결정세액 : ~ -₩1,575,000=₩5,170,715
	상5	1,800,000	1,575,000
	상6	4,945,715	5,170,715

### 2. 기타수정사항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1-81	하15	· 조세회피지역 : ~ 실제부담세액의 합계액이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발생소득 합계액의 15%보다 작은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	· 조세회피지역 : ~ 실제부담세액의 연평균액이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발생소득 연평균액에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의 7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
1-109	상3	상업어음 할인료	상업어음 할인료(매각거래인 경우)
1-238	하14	④ 가상자산(2023. 1. 1. 시행)	④ 가상자산 <b>개정</b>
1-241	상6	5. 가상자산(2023. 1. 1. 시행)	5. 가상자산 <b>개정</b>
1-355	하7	2. 제11기 사업연도의 ~	2. 제20기 사업연도의 ~
1-384	하9	*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규정은 근무연수를 직전 퇴직급여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註 : 중간정산 관련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서 내용상 변화는 없음)
1-475	하12	* 주식 및 가상자산(2023. 1. 1. 시행)에 대하여는 ~	*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
1-485	하5	① 현저한 이익의 분여 여부 (₩210,000,000-₩160,000,000) ~ 현저한 이익의 분여에 해당한다.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는 현저한 이익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다.
1-618	하9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비용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frac{\text{소각자산의 장부가액}}{\text{양수법인의 장부가액}}$
2-41	하6	3. 2018년 3월 ~	3. 2017년 3월 ~
2-129	하8	2. 상여금 : ₩21,000,000 ~	2. 상여금 : ₩15,000,000 ~

		3. 자격수당(월 ₩100,000) : ₩1,200,000	3. 자격수당(월 ₩600,000) : ₩7,200,000
2-132	상3	상여금 21,000,000 <sup>*1</sup> 자격수당 1,200,000	상여금 15,000,000 <sup>*1</sup> 자격수당 7,200,000
2-234	상14	1. 공제대상액 : (① 또는 ② 또는 ③) + ④ <b>개정</b>	소득공제 = Min[1, 2] 1. 공제대상액 : (① 또는 ② 또는 ③) + ④ <b>개정</b>
2-370	상13	2021. 1. 1. ~ 2021. 12. 31.   4천만원*	2021. 1. 1. ~ 2021. 12. 31.   2천만원
		2022. 1. 1. ~ 2022. 6. 10.   2천만원	2022. 1. 1. ~ 2022. 6. 10.   4천만원*
2-371	하13	b. 2020년 이후의 한도 : (₩30,000,000 + ₩40,000,000 + ₩200,000,000 ~	b. 2020년 이후의 한도 : (₩30,000,000 + ₩20,000,000 + ₩40,000,000 ~
2-382	하9	* 근속연수 : 2020. 1. 1. ~	* 근속연수 : 2021. 1. 1. ~
2-438	하6	~ 증여받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시설물이용권을 ~	~ 증여받은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시설물이용권을 ~
2-440	상10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시설물이용권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시설물이용권
3-32	상4	~ 2031년 7월 19일에 ~	~ 2032년 7월 19일에 ~
3-261	하3	~ Min[①발급건수×200원, ②100만원]	~ Min[①발급건수×200원, ②연간 100만원]
3-291	상17	(5) ~ 1월 29일에 (주)강남과 ~ 1월 29일에 세금계산서를 ~	(5) ~ 2021년 12월 29일에 (주)강남과 ~ 2021년 12월 29일에 세금계산서를 ~
3-332	상15	③ 공통사용재화 : ₩1,100,000×25.74% ~	③ 공통사용재화 : ₩1,100,000×25.714% ~
	상19	~ =25.74%	~ =25.714%
4-118	상11	율이 취득한 주식의 ~	같이 취득한 주식의 ~

소득세 2-36 페이지 해답은 별도로 수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 : (1) + (2) = **₩1,336,041**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① + ② = **₩136,041**

$$\textcircled{1} \text{ 납입금 초과이익} : \{ (\text{₩}14,000,000^{\ast 1} - \text{₩}5,710,526^{\ast 2} - \text{₩}6,400,000^{\ast 3}) \times \frac{1}{13\text{년}} \times \text{기본세율} \} \times 13\text{년}$$

$$= \text{₩}113,368$$

\* 1. 납입금 초과이익 : ₩100,000,000(반환금) - ₩86,000,000(납입공제료) = ₩14,000,000

2. 기본공제 : ₩14,000,000 ×  $\frac{12\text{월}}{152\text{월}}$  × 50% + ₩14,000,000 ×  $\frac{140\text{월}}{152\text{월}}$  × 40% = ₩5,710,526

3. 납입연수공제 : ₩4,000,000 + ₩800,000 × (13년 - 10년) = ₩6,400,000

$$\textcircled{2} \text{ 반환금 추가이익} : \text{₩}2,800,000 \times \frac{\text{₩}113,368}{\text{₩}14,000,000} = \text{₩}22,673$$

(2) 장기채권 이자 : ₩4,000,000 × 30% = ₩1,200,000